

제17장
협정의 운영

제17.1조
공동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.
2. 공동위원회는
 - 가.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대표로 구성된다. 그리고
 - 나.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의 권한을 그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.
3.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내에 회합한다. 그 후,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,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년에 한 번 회합한다.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기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.
4. 공동위원회는 또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특별 회기 요청일부터 과도한 지체없이 특별 회기를 개최한다.
5.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이 협정을 적용하는 동안 획득한 경험과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, 이 협정의 결과와 전체적 운영을 검토하고 평가한다.
 - 나.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양허의 수정을 포함하여,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할 수 있는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한다.

- 다.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 발생하는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 - 라.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와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.
 - 마.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.
 - 바. 어느 한쪽 당사국이 요청한 경우, 이 협정의 규정에 부여될 상호 합의된 해석을 제안한다.
 - 사. 이 협정이 상정한 대로 결정을 채택하거나 권고를 한다. 그리고
 - 아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.
6.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업무 절차 규칙을 수립한다.
7. 공동위원회와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나 작업반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한 그 밖의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.
8.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한다.

제17.2조

의사소통

1. 각 당사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의 공식적 의사소통을 수신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.
2. 이 협정과 관련된 모든 공식적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진다.